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86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서미화・윤종군・김문수

김예지 · 김남근 · 박민규

황운하 • 박정현 • 황명선

강선우 · 조인철 · 박해철

조계원 · 부승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한 비율

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66조에 따른 보고·검사 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 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0호 중 "제75조제1항을"을 "제75조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 ④ (생 략)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66조에 따른 보고・검사 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격리 등 신체		
	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		
	<u>다.</u>		
<u> <신 설></u>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제한 외		
	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		
	<u>다.</u>		
<u> <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		
	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 1. ~ 9. (생 략)
- 10. <u>제75조제1항을</u> 위반하여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 을 한 자
- 11. (생략)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벌칙)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75조를</u>
11. (현행과 같음)